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08
----------	------

2017년 4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자 : 2017년 2월 6일
- 다. 회부일자 : 2017년 2월 7일
- 라. 상정결과 :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년 4월 20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고흥석)

가. 제안이유

- 서울시 공공미술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으로 '살고 싶은 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2) 공공미술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6조)

- (3) 건축물 미술작품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5조)
- (4) 공공미술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26조~29조)
- (5) 보칙(안 제30조~32조)
 - 민간전문가 운영, 권한의 위임 등
- (6) 부칙(안 제1조~10조)
 - 시행시기,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경과조치, 위원회 존속기한 등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2) 예산조치: 2017년 예산 반영
- (3) 협의사항
 - ①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사항 없음
 - ②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적정
 - ③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 완료
 - ④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 ⑤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 ⑥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사항 없음
 - ⑦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 (4) 기타
 - ① 입법예고 (2017. 1. 5. ~ 1. 25.) 결과: 의견 없음
 - ② 비용추계 등 자료: 별도 붙임
 - ③ 부패영향평가 자료: 별도 붙임
 - ④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료: 별도 붙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정옥)

가. 제정안 개요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이원화된 서울시 공공미술의 현재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공공미술위원회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하여 서울시 공공미술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되었음.

나. 조례 제정 개요

-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공공용지에 위치한 동상·기념비·조형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위임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심의와 설치에 대해 동 조례에 근거하여 관리 중임.

그러나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경우, 조례상 관리대장의 작성·비치와 연1회 상태점검, 연간관리계획의 수립 마련이 의무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8월 동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기까지 미흡한 관리 실태로 우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으며,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우, 실태가 파악된 작품수만 3,400여점에 이르러 실질적인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 외에도 서울시에 설치되는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벽화·미디어

아트 등 도시갤러리 프로젝트에 의해 설치된 작품들의 관리와 사후활용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적되었던 바 종합적인 관리 체계의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표 1〉 서울시 공공미술 작품 관리체계

구분	건축물 미술작품	동상기념비·조형물	도시갤러리	기타작품	
				공공분야	민간분야
관리 주체	건축물 소유주	공공용지 관리기관장	서울시	설치기관	설치자(단체)
근거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	-	-
개수	3,446점	동상 54점 기념비 128점 조형물 115점	81점	-	-
관리 방법	자치구에서 연1회 이상 실태점검 및 행정지도 (조례 제32조)	공공용지 관리기관 장이 연1회 이상 실태점검 및 보수 (조례 제13조)	분기별 작품 일제 점검 후 점검결과에 따라 유지 보수 실시	자체 계획에 의해 관리	개인 및 단체

출처 : 서울연구원 ‘서울시 공공예술 개선방안(17p, 19p)’ 재구성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을 의결하여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배포·권고한 바 있는데, 본 권고에는 ▲공공미술의 무분별하고 불투명한 건립, ▲사후관리의 미흡, ▲예산의 낭비 등을 지적하면서, △관련 조례 검토 및 개정, △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의 마련 △사후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효율성 제고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함.
- 서울시는 이에 따라 공공미술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2014년 ‘서울시 공공미술작품 종합개선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서울시 공공미술 관리 개선방안 연구’를 시행한 바 있음.

‘서울시 공공미술작품 종합개선 계획(2014)’의 경우, △공공미술의 방향과 목표 설정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공공미술의 실태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기존 조례 개정을 통한 무분별 작품 설치의 제한 △관리체계 강화 및 활용성 제고를 개선 방향으로 하였으며,

‘서울시 공공미술 관리 개선방안 연구(2015)’에서는 이에 더해 △중장기 비전의 설정 필요 △작품수명제한제도의 도입 △공공미술의 비전과 미션을 위한 기구 구성 등이 제안되었음.

또한, 서울연구원에서는 최근인 2017년 ‘서울시 공공예술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공공미술 작품관리체계의 재구성 △관리주체의 형성 △공공미술 사업절차 재구성 △관리기반의 형성과 △관련 조례의 개정을 제안한 바 있음.

- 이러한 계획과 연구를 바탕으로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는 2016년 12월 6일 ‘2017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삶이 작품이다. 도시가 예술이 된다.’, ‘서울의 곳곳이 작품이 된다. 서울은 지붕 없는 미술관이다.’라는 이념 및 목적을 세워 공공미술 사업 고도화를 추진 중이며,

동 조례안을 제출하여 기존 조례의 통합¹⁾은 물론, 관리체계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시갤러리 등의 관리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 조례안 체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1)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의 관련 조항 삭제가 포함되어 있음.

규정하기 위해 32개의 본칙과 10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규정(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안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공공미술의 관리 및 활용(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보칙(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등을 규정함.

〈표 2〉 조문체계 및 주요내용

조번호	조제목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
제2조	정의	‘공공미술’, ‘공공미술 사업’ 등 용어의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조례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 소유·관리 공공용지 설치 미술작품과 「문화예술진흥법」의 건축물 미술작품 등으로 한정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장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		
제5조	공공미술위원회의 설치	공공미술위원회 설치
제6조	공공미술위원회의 기능	공공미술 관련 주요 정책 수립 등의 기능 수행
제7조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 설치절차 등	공공용지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제8조	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 구성 규정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공공미술위원회 업무 총괄
제12조	공공미술위원회의 운영	공공미술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등 규정
제13조	회의록 등의 비치	회의록, 심의의결서 작성 비치 의무
제14조	비밀준수	
제15조	협조요청 등	
제16조	수당 등	공공미술위원회 위원 수당·여비 규정
제3장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제17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심의
제18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기능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기능 수행
제19조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고지·허가·승인 등
제20조	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작품선정
제21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20명 이내의 위원 구성 규정
제22조	규정의 준용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 준용
제23조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동 조례안의 심의 결과에 따른 설치의 확인
제24조	건축물 미술작품의 가격	설치 계약서상 및 감정평가상 금액 준용
제25조	공동주택의 건축물 미술작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에 따름
제4장 공공미술의 관리 및 활용		
제26조	공공미술의 관리	공공미술 관리대장·점검 등 규정
제27조	공공미술의 활용	공보미술 활용 방안
제28조	서울특별시지정 공공미술	서울특별시지정 공공미술의 운영
제29조	가이드라인	공공미술 가이드라인 마련
제5장 보칙		
제30조	민간전문가의 운영 등	민간전문가 위촉 및 수당·여비 규정
제31조	권한의 위임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구청장 위임 사항
제32조	시행규칙	시행규칙의 설치
부칙		

라. 주요 조문별 검토

□ 제1장 총칙

- 동 조례안 제1장 총칙규정은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적용범위),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고,

안 제1조(목적)에서 동 조례의 목적을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과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를 규정하여 공공미술의 활성화 및 작품수준 향상 도모로 두고 있음.

〈표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의 경우, 기존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포함된 작품(이하 “동상·기념비·조형물”)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갤러리 등(이하 “도시갤러리”)을 대상으로 하며,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미술작품'의 경우, 기존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9장 및 제10장으로 관리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건축물 미술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이원화된 조례 체계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있는 것임.

〈표 4〉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조번호	조제목
제9장 미술작품의 설치	
제30조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제31조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제32조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제33조	미술작품의 가격결정 등
제34조	공동주택의 미술작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제10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제35조	기능
제36조	구성 및 임기
제37조	위원의 회촉
제38조	회의의 운영

- 안 제2조(정의)에서는 “공공미술”을 서울특별시 소유·관리의 공공 용지와 건축물에 설치되는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벽화·미디어 아트·기념비 등의 미술작품으로 정의하며, “공공미술 사업”은 공공 미술의 신규제작·설치, 교체, 이전, 변경, 철거 등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주관기관”은 공공미술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관리기관”은 공공용지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서울특별시 본청,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으로 분류하여 정의함.

- 안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동 조례안을 공공미술(동상·기념비·조형물, 도시갤러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적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축제·행사의 미술품에 대해서는 적용의 예외를 두고 있음.

□ 제2장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

- 안 제5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구성과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공공미술위원회의 설치)는 공공미술의 정책, 제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2016.7)’에 따르면 위원회 설치는 설치 전 일정기간(1년 정도) 동안 T/F(Task Force)형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실적을 갖춘 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의 위원회 설치검토 결과를 받아 최종적인 설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표 5〉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위원회를 설치할 때 사전협의 절차) ①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 별지 서식의 위원회 신설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민관협력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청서를 제출받은 민관협력담당관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조례 제7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 설치에 관한 입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위원의 구성 및 임기, 해촉기준 등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민관협력담당관의 검토 결과

④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입법계획은 민관협력담당관의 협조 결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는 2016년 7월부터 T/F형 자문단의 일환으로 11명의 전문가를 ‘공공미술 자문회의’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현재까지 서울시 공공미술의 철학과 비전 설정, 공공미술 국제컨퍼런스 「서울은 미술관」 추진,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심사 등 16건의 운영실적을 갖추고 있으며,

2017년 1월 5일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으로부터 〈표 6〉과 같이 해당 보완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 설치에 대해 ‘적정’ 통보를 받음.

〈표 6〉 공공미술위원회 신설 검토결과(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

□ 검토결과

○ 설치요건 : 적정(단, 지침상 요건은 일부 미충족)

-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가 없으므로 조례상 위원회 설치요건은 충족함.
- 그러나 위원회 설치 전 일정기간(1년 정도) 동안 자문단으로 구성·운영 하도록 하는 지침상의 요건은 충족하지 못함.
- 조례 제정 전까지 자문단을 운영한 후, 평가결과를 위원회 설치·운영에 반영할 것.

○ 위원회 구성

- 민관협력담당관과의 사전협의 절차 및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구성할 것.

- 안 제6조(공공미술위원회의 기능)는 위원회의 서울시 공공미술 관련 주요 정책 수립·시행, 제도개선, 미술작품의 설치, 공공미술 활성화 방안 및 사후관리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한정하고자 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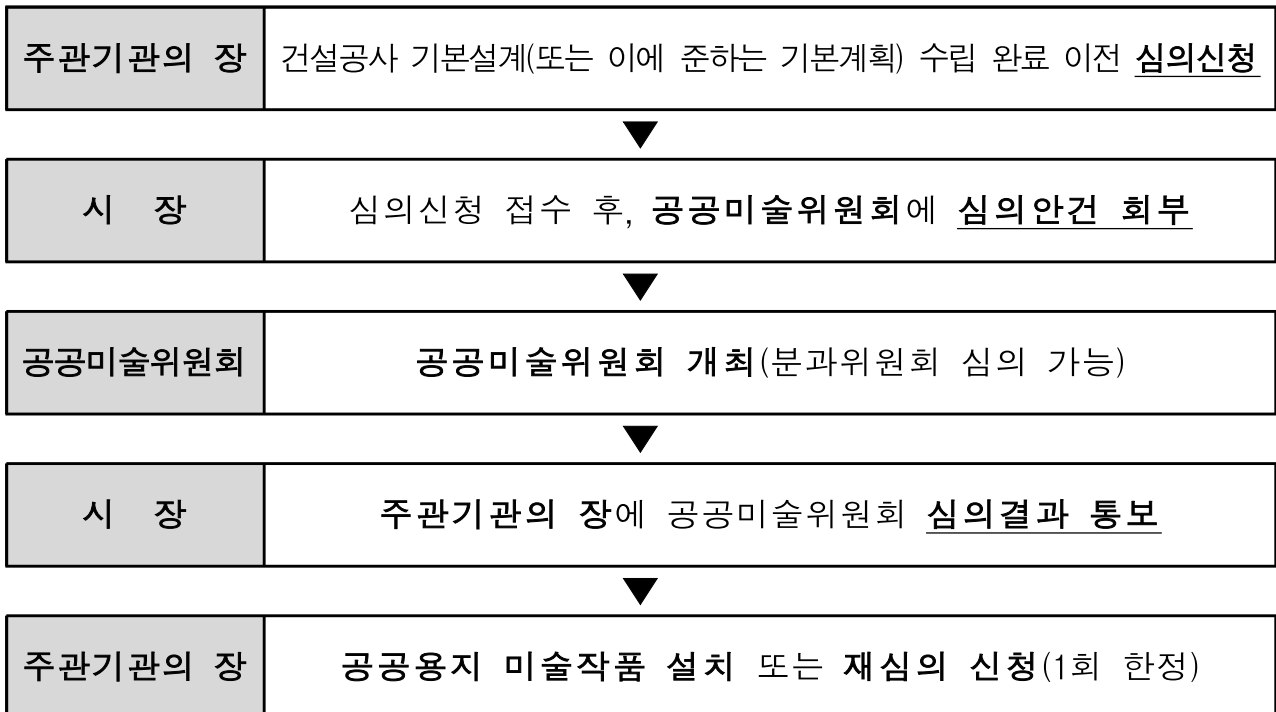
특히, 안 제6조제5호의 경우, 위원회는 “시, 서울특별시 투자·출연 기관·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요청하고, 공공미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공미술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관리대상을 ‘공공용지’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자치구 등이 요청하거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공미술 사업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임.

한편, 2016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 당시 ‘공공용지’의 기준이 논란이 된 바,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공공용지’는 사유지로 한정하고, 자치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해당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²⁾.

- 안 제7조(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 설치절차 등)는 공공미술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장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공공용지의 건설공사 기본설계 수립 완료 이전 심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설치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그림 1> 공공용지 대상 미술작품 설치절차



2) 당시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의 관리주체 논란이 있었던 바, 향후 구청에서 사무에 대한 위임을 요청할 시 공공미술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해짐.

- 안 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의 경우, 위원회 위원을 최소 7명, 최대 12명으로 구성하고 구체적인 위원의 자격, 임기, 간사 임명에 대한 규정을 서술하고 있음.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데, 동 조례안이 규정한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미술위원회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관 상임 위원회 위원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7〉 안 제8조 수정의견

제정안	수정의견
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2. (생략) <u><신설></u> ④~⑤ (생략)	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2. (제정안과 같음) <u>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u> ④~⑤ (제정안과 같음)

또한, 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간사 임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2016.7)’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 연임 최대 6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최대 4년 (2년 임기, 1회 연임 가능)으로 제한된 동 조례안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사료됨.

- 안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는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의 내용을 따른 것으로 보임.

한편,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동 조례안을 검토하며 부패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에 전달하였는데, 위원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할 것을 통보하였음.

그러나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공공미술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달리 ‘자문기관’에 불과하므로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의 수준은 타 조례에 포함된 위원회³⁾와 유사하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2조(공공미술위원회의 운영)는 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시장의 심의안건 회부 및 자문요청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심의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미술의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빠른 시일 내에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및 지침을 명문화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한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3) 부패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감사위원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공공미술위원회 수준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3조(회의록 등의 비치)는 위원회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속기사의 회의록 작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례안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검토의견으로 회의 결과 공개 등 명확한 공개 규정을 추가할 것이 개선권고 사항으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에 전달되었고,

‘2015년도 위원회 운영평가를 통한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계획 (2016.3)’에 따르면, 서울시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서명 및 회의내용 기록·보관을 의무화하는 개선방안과 함께 회의 내용 기록 또한 의무화할 것을 계획하였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따르면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8〉 안 제13조 수정의견

제정안	수정의견
제13조(회의록 등의 비치) 공공미술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u>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u>	제13조(회의록 등의 비치) 공공미술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u>속기록 또는 녹음 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u>

- 안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비밀준수), 제15조(협조요청 등) 및 제16조(수당 등)는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규정된 것임.

□ 제3장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 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는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29조부터 제38조까지를 차용하여 구성한 것임.

〈표 9〉 동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유사비교표

제정안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7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5조(기능)
제18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기능)	제35조(기능)
제19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	제30조(미술작품의 설치절차)
제20조(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제30조(미술작품의 설치절차)
제21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6조(구성 및 임기)
제22조(규정의 준용)	없음
제23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제31조(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제24조(건축물 미술작품의 가격)	제33조(미술작품의 가격결정 등)
제25조(공동주택의 건축물 미술작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제34조(공동주택의 미술작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 안 제17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두고 있음.

〈표 10〉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 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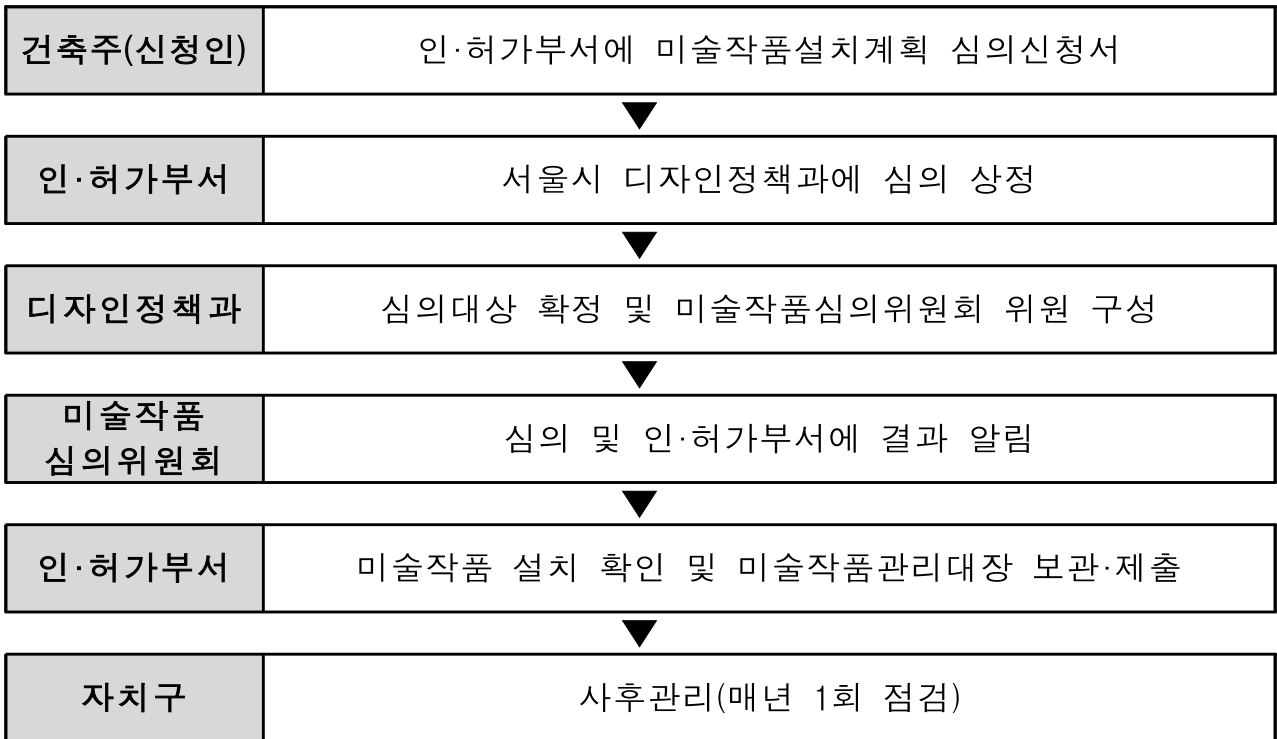
한편, 동 조례안은 제2장의 공공미술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서울시민관협력담당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규정한 반면, 제3장의 심의 위원회에 관해서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었는데, 이는 기존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이미 있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그대로 두는 것이므로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른 것임.

- 안 제18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기능)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건축물 미술작품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접근성,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된 것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5조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소장품 설치의 적정성, 공모를 통한 당선작의 선정,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위치변경, 교체, 철거 등을 추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됨.

- 안 제19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는 기존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0조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그림 2〉와 같이 심의함.

〈그림 2〉 미술작품 심의절차도



- 안 제21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는 기존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6조에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던 것에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축소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기존 최소 2년, 최대 4년간의 임기 기간을 최소 1년, 최대 4년으로 변경하였음.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 중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이 임명 또는 위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표 11〉 안 제21조 수정의견

제정안	수정의견
<p>제21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p> <p>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 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p> <p>1. (생략)</p> <p><u>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u></p> <p>3. (생략)</p> <p>④ (생략)</p>	<p>제21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p> <p>①~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 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p> <p>1. (제정안과 같음)</p> <p><u>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u></p> <p>3. (제정안과 같음)</p> <p>④ (제정안과 같음)</p>

- 안 제20조(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는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0조제2항 및 제5항과 유사하며, 안 제22조 (규정의 준용)은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등의 사항에 관하여 공공미술위원회의 규정을 준용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안 제23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안 제24조(건축물 미술작품의 가격) 및 안 제25조(공동주택의 건축물 미술작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는 각각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와 동일함.

□ 제4장 공공미술의 관리 및 활용

- 안 제26조부터 안 제29조까지는 공공미술의 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6조(공공미술의 관리)는 기존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관리)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미술의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작성·비치, 연간 관리계획 및 정기점검 실시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공미술의 수시점검, 작품 생애주기 설정, 사회적 문제가 될 만한 공공미술의 심의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12〉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관리) 관리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동상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서식의 동상·기념비·조형물 관리대장
2. 관리책임자는 동상등을 순찰하여 동상등 및 그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동상등에 대해 연 1 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동상등이 보수 또는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은 해당 동상등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5. 건립주체의 해체 등으로 해당 동상등에 대한 보수 또는 보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해당 동상등을 직접 보수 또는 보존처리 할 수 있다.

다만, 공공미술의 실질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서울시 공공미술 실태조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서울시내 건축물 미술작품만 3,446점(서울연구원 추정)에 이르는 등 작품수가 실태조사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많아 어려움이 있으며,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에서는 동 조례안의 마련이 서울시

공공미술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고, 실태조사의 경우 가능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의견을 밝힌 바('17.4.17) 있으므로 향후 공공미술 관리에 대한 실효성 마련에 대해 면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7조(공공미술의 활용)는 공공미술 활성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이를 활용한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간행물 제작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28조(서울특별시지정 공공미술)는 공공미술 우수작품에 대해 공공미술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지정 공공미술'로 특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29조(가이드라인)의 경우, 공공미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공미술 설치, 관리, 철거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5장 보칙

- 안 제30조부터 안 제32조까지는 보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안 제30조(민간전문가의 운영 등)의 경우, 공공미술 정책의 자문 또는 주요사업의 총괄·조정 등을 위한 민간전문가의 위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동 조례안이 공공미술위원회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공공미술 위원회의 경우 '공공미술의 정책, 제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이 외의 민간전문가의 운용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또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르면, 굳이 동 조례안에서 다시 민간전문가를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미술과 관련한 민간전문가 운용은 ‘특정 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운영이 가능하여 동 조례안의 조문을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표 12〉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p>「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p> <p>제5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특정 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가 필요한 경우</p> <p>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 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p>

〈표 13〉 안 제30조~제32조 수정의견

제정안	수정의견
<p>제30조(민간전문가의 운영 등) ① 시장은 공공미술 정책의 자문 또는 주요사업의 총괄·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31조(권한의 위임) (생략)</p>	<p>제30조(권한의 위임) (제정안과 같음)</p>
<p>제32조(시행규칙) (생략)</p>	<p>제31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p>

- 안 제31조(권한의 위임)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고지, 공모 진행, 계획서 접수, 설치 확인, 관리대장 마련, 사후관리 등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2조(시행규칙)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

□ 부칙

- 동 조례안의 부칙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중 동 조례안에 반영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또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경우 기존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새롭게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인원, 임기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됨.

공공미술위원회의 경우, 동 조례안의 시행 전 T/F형 자문단인 ‘공공미술 자문회의’가 구성된지 1년을 경과하게 되므로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의 요건을 충족하여 위원회 설치 타당성이 더욱 명료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동 조례안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됨.

〈표 14〉 수정의견 종합

제정안	수정의견
<p>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p> <p>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p> <p>1.~2. (생략)</p> <p><u><신설></u></p> <p>④~⑤ (생략)</p>	<p>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p> <p>①~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p> <p>1.~2. (제정안과 같음)</p> <p>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p> <p>④~⑤ (제정안과 같음)</p>
<p>제13조(회의록 등의 비치) 공공미술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u>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u></p>	<p>제13조(회의록 등의 비치) 공공미술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u>속기록 또는 녹음 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u></p>
<p>제21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p> <p>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p> <p>1. (생략)</p> <p>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p> <p>3. (생략)</p> <p>④ (생략)</p>	<p>제21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p> <p>①~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p> <p>1. (제정안과 같음)</p> <p>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p> <p>3. (제정안과 같음)</p> <p>④ (제정안과 같음)</p>

<p>제30조(민간전문가의 운영 등) ① 시장은 공공미술 정책의 자문 또는 주요사업의 총괄·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31조(권한의 위임) (생략)</p>	<p>제30조(권한의 위임) (제정안과 같음)</p>
<p>제32조(시행규칙) (생략)</p>	<p>제31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p>

마.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서울시의 공공미술에 대한 관리체계가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이에 대한 통합 조례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 체계에 의해 관리되지 못했던 공공용지 및 건축물에 건립·설치된 도시갤러리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음.

또한,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근거하여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이원화는 부득이한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회와 심의위원회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동 조례안은 공공미술의 관리와 활용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는데,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이외에도 민간전문가를 두는 규정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동 조례안의 제정은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2015년 서울디자인재단 연구, 2017년 서울연구원의 연구 등을 통해 기존 조례의 개선이 계속적으로 요구되어져 왔으며, 서울시의 2014년 2월 ‘공공미술작품 관리개선 종합계획’과 2016년 12월 ‘2017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통한 공공미술 관리 노력에 따른 것임.

다만, 우리 위원회로부터 2016년 8월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될 당시 조례 제정(2010.9)부터 현재까지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관리가 허술한 것이 지적되었으며,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우 또한 작품수가 3,400여점에 달해 실질적인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공공미술 관리의 실효성까지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또한, 서울연구원(2017) 연구에 따르면, 설치물 관리 중심의 현 제도가 공공예술의 변화하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작품 설치보다는 유지보존 및 철거, 사후활용 등에 초점을 맞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이해경 위원 : 실효성있는 공공미술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미술 실태조사의 추진이 필수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명기되지 않은 것은 어떠한 사유 때문인지
고홍석 문화본부장 : 공공미술 작품수가 실태조사를 하기에는 너무 많아 예산 확보 후 추진이 가능한 어려움이 있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조례안의 내용 중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며,

회의록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이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의무화된 바 이를 명기하고, 공공미술위원회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외의 민간전문가 위촉·운영은 위원회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나. 수정 주요골자

- 공공미술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가함(안 제8조제3항제3호)
- 공공미술위원회 회의록 등의 비치에서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안 제13조)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자격기술에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수정함(안 제21조제1항제2호)
- 민간전문가의 위촉·운영 규정을 삭제함(안 제30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08
----------	---------

제안연월일 : 2017년 4월 20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공공미술위원회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하여 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며,

회의록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이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의무화된 바 이를 명기하고, 공공미술위원회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외의 민간전문가 위촉·운영은 위원회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2. 주요골자

- 공공미술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가함(안 제8조제3항제3호)
- 공공미술위원회 회의록 등의 비치에서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안 제13조)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자격기술에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수정함 (안 제21조제1항제2호)

- 민간전문가의 위촉·운영 규정을 삭제함(안 제30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안 제13조 중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21조제1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안 제30조를 삭제한다.

안 제31조와 제32조를 각각 제30조와 제31조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안
<p>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2. (생략) <u><신설></u> ④~⑤ (생략)</p>	<p>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2. (제정안과 같음)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④~⑤ (제정안과 같음)</p>
<p>제13조(회의록 등의 비치) 공공미술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u>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u></p>	<p>제13조(회의록 등의 비치) 공공미술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u>속기록 또는 녹음 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u></p>
<p>제21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생략) <u>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u> 3. (생략) ④ (생략)</p>	<p>제21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제정안과 같음) <u>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u> 3. (제정안과 같음) ④ (제정안과 같음)</p>
<p>제30조(민간전문가의 운영 등) ① 시장은 공공미술 정책의 자문 또는 주요사업의 총괄·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u><삭제></u></p>
<p>제31조(권한의 위임) (생략)</p>	<p>제30조(권한의 위임) (제정안과 같음)</p>
<p>제32조(시행규칙) (생략)</p>	<p>제31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과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미술을 활성화하고, 작품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미술”이라 함은 공원·도로·녹지대 등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되는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벽화·미디어아트·기념비 등의 미술작품을 말한다.
2. “공공미술 사업”이라 함은 공공미술을 신규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교체, 이전, 형상변경, 철거하는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공공미술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관련 인·허가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관리기관”이라 함은 공원·도로·녹지대 등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서울특별시 본청(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 나. 서울특별시 소속기관
 - 다.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 라. 서울특별시 자치구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원·도로·녹지대 등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이하 “공공용지”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의 설치에 적용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공용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미술의 설치와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

제5조(공공미술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미술의 정책, 제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이하 “공공미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공공미술위원회의 기능) 공공미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미술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공공미술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 설치
4. 공공미술 활성화 방안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시,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요청하고, 공공미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공미술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미술 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

제7조(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 설치절차 등)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공공용지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이에 준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공공미술위원회에 심의안건을 회부하고, 심의결과는 심의신청을 한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미술위원회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안건별로 분과위원회를 따로 두어 심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의 장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신청은 1회에 한정한다.

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 ① 공공미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공미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

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미술, 건축, 디자인,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관련 학회·협회 등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미술, 건축, 디자인, 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공공미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미술위원회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공공미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미술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공미술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공미술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공미술위원회를 대표하고, 공공미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공공미술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이 심의안건을 회부하거나 자문 요청을 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공공미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공공미술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미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공공미술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는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공공미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등의 비치) 공공미술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 공공미술위원회의 위원 및 그밖에 공공미술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협조요청 등) 공공미술위원회는 심의를 하는데 있어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 또는 관련 부서의 장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공공미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제17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이하 “건축물 미술작품”이라 한다)의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8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물 미술작품의 예술성(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2. 건축물 미술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환경과의 친화성, 설치 위치의 적정성)
3.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공성
4.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
5. 건축물 미술작품과 건축물과의 조화
6. 소장품 설치의 적정성
7. 건축물 미술작품 가격의 적정성
8.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모당선작 선정
9.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위치변경 및 작품의 교체·철거
10. 그 밖에 건축물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의 기여도 등

②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 및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건축물 미술작품을 공공장소 및 특정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미술작품은 해당 건축물을 위하여 신규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품도 해당 건축물을 위하여 구입한 것임을 건축주가 증명한 경우에는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 전까지 시장에게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서울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① 시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해 작품을 제작·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가 시장에게 공모를 요청할 시에는 작품의 공모 및 작품선정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를 대행할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공모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모당선작 선정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제21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미술·건축·디자인·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그 밖에 미술·건축·디자인·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규정의 준용) 그밖에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시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건축물 미술작품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건축물 미술작품의 가격) ① 건축물 미술작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 또는 그 대행인 간의 설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 건축주가 소장품을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제1항의 가격은 전국단위로 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하고 있는 법인 등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금액으로 한다.

제25조(공동주택의 건축물 미술작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에 따른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장 공공미술의 관리 및 활용

제26조(공공미술의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미술에 대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변환경 및 작품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공공미술이 철거·훼손되거나 분실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별도의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미술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공공미술의 설치주체는 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품 설치 시에 작가의 동의를 받아 작품의 생애주기를 설정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공공용지에 설치된 미술작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기는 등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심의를 요청하거나 심의를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공공미술의 활용) 시장은 공공미술을 활성화 하고, 공공미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미술을 활용한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2. 공공미술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3. 그 밖에 공공미술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28조(서울특별시지정 공공미술) ① 시장은 공공용지 또는 민간부지에 설치된 공공미술에 대해 서울특별시지정 공공미술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지정 공공미술은 보존상태, 활용실태, 활용가능성, 설치장소, 역사성, 작품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미술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③ 시장은 선정된 작품에 대해 관리와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가이드라인) 시장은 공공미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미술의

설치, 관리, 철거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고지, 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권장 및 공모대행, 미술작품설치계획서 접수 관련 업무
2.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3.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대장 작성·비치, 건축물 미술작품 점검, 건축물 미술작품의 철거·훼손·분실 시 건축주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등 사후관리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공공미술위원회 구성준비)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공공미술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무를 행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앞에 “제9장 미술작품의 설치”를 삭제한다.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 앞에 “제10장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삭제한다.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29조에 따른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준비)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기존 미술작품심의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이 조례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무를 행할 수 있다.

제7조(미술작품 설치절차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은 이 조례 시행 후에 건축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제21조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존속기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